

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1993. 11. 3

議會運營委員會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년 10월 16일 이수송 의원외 11인 발의
- 나. 회부 일자 : 1993년 10월 22일 회부
- 다. 상정 일자 :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(93.11.3)

2. 제안 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수송 의원)

가. 제안 이유

- 부산직할시 남구 직제 규칙 개정(93.7.19 남구규칙 제289호)으로 건설 행정과가 신설되고 토지관리과가 폐지되었으며 지적과가 총무국 소관에서 도시국 소관 부서로 개편되는 등 정부 시책과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행정 기관의 직제가 수시로 변경되는 현실에 있으며,
-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는 제3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.과를 명시하고 있음.
- 따라서 남구 직제 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국.실 단위로 조정함으로써 빈번하게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 골자

- 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제2항 제1호중 총무국 소관 과명칭
(총무, 재무, 세무1.2, 지적, 시민, 민방) 삭제
- 제3조 제2항 제2호중 사회산업국 소관 과명칭(사회, 가정복지, 환경
보호, 청소, 위생, 지역경제) 삭제
- 제3조 제2항 제3호중 도시국 소관 과명칭(도시정비, 지역교통, 토지관리,
건축, 건설)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식)

○ 검토 의견

- 정부 시책과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행정 기관의 과단위 자체가 수시로
변경되는 현실에 있으며,
-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에
실.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서 하위 규정인 남구 실제 규칙이 개정될때
마다 상위 규정인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모순과 행정력이
낭비를 초래하고 있음.
-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현행 실.과 단위에서 국.실 단위로
조정하는 이건 조례 개정안은 극히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지방자치법 제6절 위원회에 관한 법(제50조 ~ 제54조)에는 상임위원회별
소관 사항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,
- 동법 제54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에 “위원회에 관하여 이법에 정한 것을
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조례에
대한 개정안은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, 답변 요지 : 없 음

5. 심사 결과 : 전원 일치 원안 가결

6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